

2024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CONTENTS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

1. 기술자료 임치제도 소개	2
• 제도개요	2
• 이용효과	4
• 계약유형	4
• 계약절차	5
• 수수료 및 감면정책	5
2.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6
3.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7
• 활용사례	8
• 수수료 지원방법	9
4. 임치제도 반영현황	10
5.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11
6. 임치제도 QnA	12
임치법령 및 만화 등	

1

기술자료 임치제도 소개

기업의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신뢰성 있는 임치기관에 보관하여 기술보호 및 개발 사실을 입증

*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임치제도)

제도의 목적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유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혁신성장의 기반 제공
- 수·위탁기업간 부당한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

연혁

수·위탁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20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4조의2 신설
임치제도 근거 마련 및 운영 시작
- 2010 상생협력법 제24조의3을 신설
임치한 기업에 대하여 개발 추정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15 임치계약 25,000건(누계) 달성
- 2017 전자금고 임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임치수수료 감면 정책 시행
- 2018 동반성장지수 가점 반영(1점)
임치수수료 감면정책 확대(창업/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기업 포함)
- 2019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가점 반영(2점)
ISO 9001 인증
임치계약 63,000건(누계) 달성
- 2020 ISO 27001 인증
장기계약 임치수수료 감면 혜택 적용(5년 이상 계약 시, ½ 감면)
- 2022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지원제도 시행

이용대상

- 타 기업의 모방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기술자료)

기술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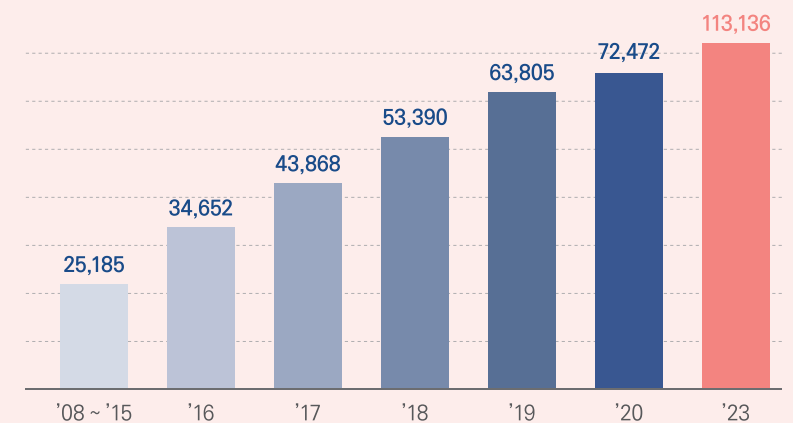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이용현황

현재까지 110,000건 가까운 기술이
임치계약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에서 협력사의 기술임치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삼자간 임치 사용인으로 등록된 계약
11,945건('08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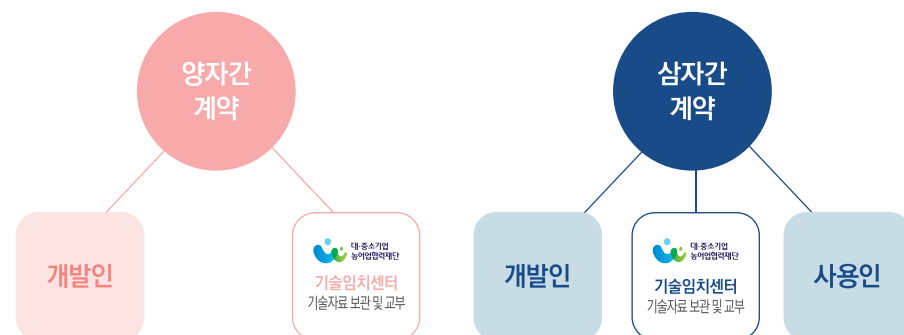
[연도별 임치계약건수 현황(누적)]



임치제도 이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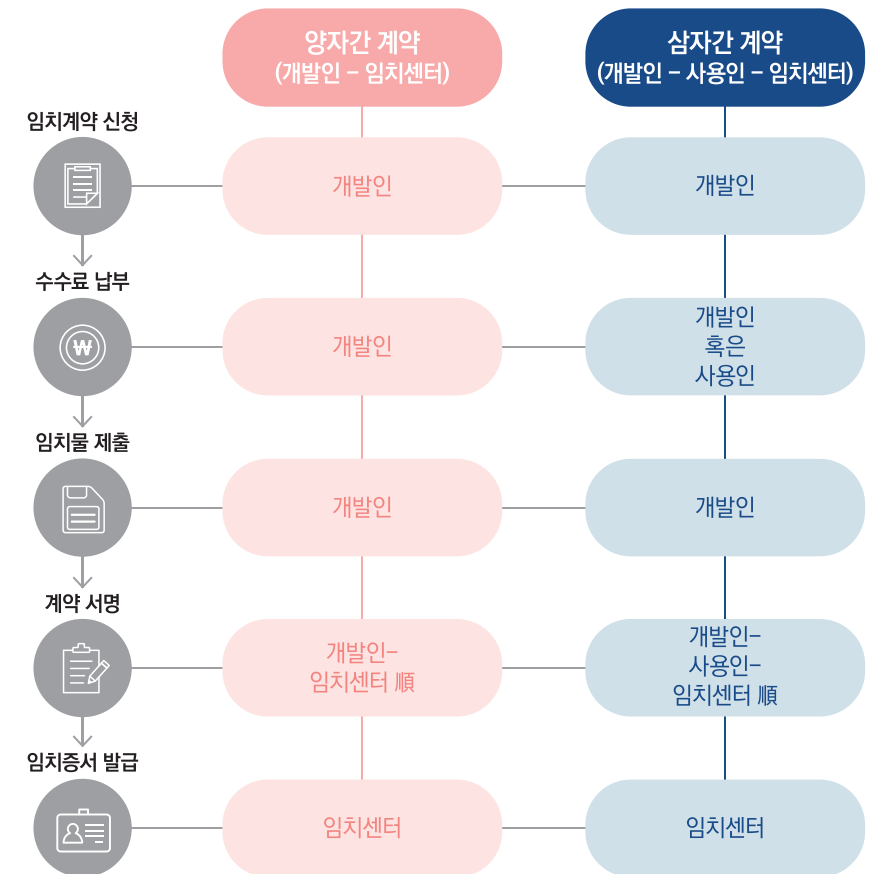


임치 계약유형



- * 개발인 : 기술을 개발하여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
- * 사용인 : 개발인이 소유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임치물의 교부조건(개발인 파산 및 사업장폐쇄, 개발인 동의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인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포함)

계약절차



기술임치 수수료 및 감면정책

구 분	이용수수료	비 고
신 규	300,000원/년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수료 1/3 감면 5년 이상 장기계약 시, 수수료의 1/2 감면
갱 신	150,000원/년	
편 입	50,000원/년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이 생겨 계약에 편입
추 가	50,000원/건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또는 거래예정기업에 제출 하기 전 아이디어 단계부터의 보호를 위해 임치 시 무료 이용(1년이내) 가능 (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2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개발기술, 핵심 보유기술, 경영정보 등을 제3기관에 임치(갱신포함) 하거나 협력사의 기술임치를 지원한 실적

점수	1.0	0.8	0.6	0.4	0.2
지원 건수	2000이상	150~199	100~149	50~99	1~49

- * 신규계약의 경우, 실적건수 2배로 가산(신규계약 1건 → 2건 인정)
- *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건당 1건으로 인정(갱신계약 1건 → 1건 인정)

제출서류

- 기술자료임치증 및 수수료 지원 증빙자료(내부결재문서, 입금내역, 계산서 등)
상생기금으로 지원한 경우 “민간자율 기획사업 지급신청서” 함께 제출
- 재단과 삼자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자료임치증만 제출
- 스마트공장건의 경우 피평가기관이 지원한 스마트공장 과제의 계약건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스마트공장 과제 협약서 등) 제출

참고 및 주의사항

- 1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실적은 100% 가산하여 반영
- 2 중견기업은 실적에 100% 가산하여 반영
- 3 실적 인정·미인정 기준 및 주의사항
 - 임치계약기간 시작시점이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는 건만 인정
 - 당해 연도 내 동일한 임치계약에 대한 중복지원은 1건만 인정
 - 특허, 원본증명서비스 등은 불인정

〈동반성장지수 ‘기술보호 지원’ 배점현황〉

제조	건설	식품	도소매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정보 서비스	통신	플랫폼	가맹점	광고
실적 (2)	실적 (2)	실적 (2)	실적 (2)	실적 (2)	실적 (2)	실적 (3)	실적 (2)	실적 (3)	실적 (2)	실적 (2)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기준을 상이하게 운영(자세한 사항은 세부평가지표 참고)

3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기술혁신 및 기술보호 지원

8. 기술자료 임치 이용·지원 실적(1.2점, 계량)

양자간 계약	20건 이상	15~19건	10~14건	5~9건	1~4건
삼자간 계약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1~3건
점 수	1.2	0.9	0.6	0.3	0.1

※ 성과공유과제 등록·확인시 혹은 성과공유제를 통한 납품구매시, 협력사 기술임치 지원하는 경우 지원건수에 가중치 부여 [양자간 : 200%(2배), 삼자간 : 150%(1.5배)]

9. 기술자료 임치제도 규정반영 및 활용(0.3점, 계량)

기관 규정 및 지원사업 지침 등에 임치 의무화 규정 마련 / 운영	0.3
기관 규정 및 지원사업 지침 등에 임치 권고 / 우대사항 등의 규정 마련하고 활용한 경우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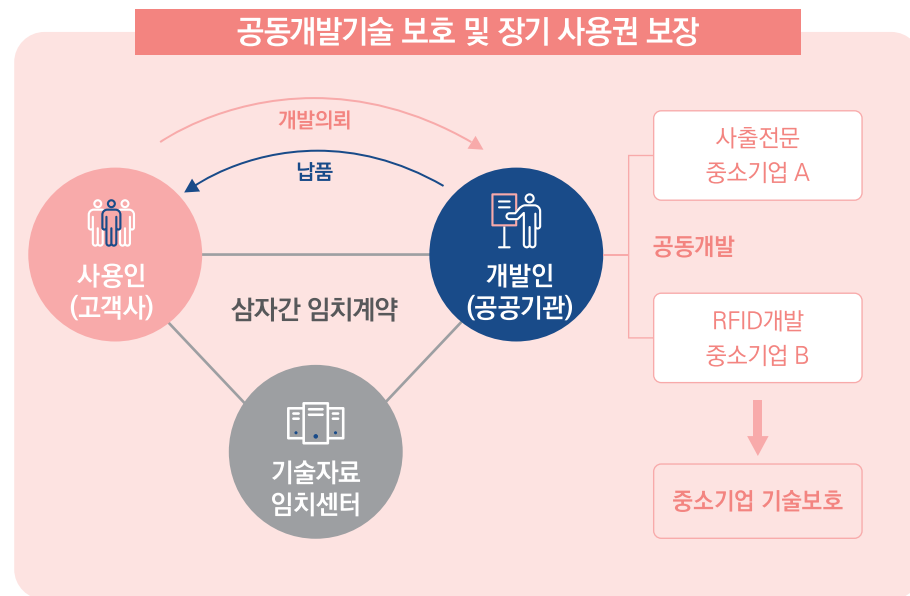
임치 이용 지원 건수 평가 방법

- 임치계약기간 **시작시점**이 평가기간('24.1~'24.12) 내에 포함되는 건만 인정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기간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함)
- 양자간 계약과 삼자간 계약 **실적을 합산**하여 점수 산출
- 삼자간 계약의 경우, 임치수수료를 지원하지 않아도 인정
(단, 사용인이 피평가기관인 경우에 한함)
- 당해연도('24.1~'24.12) 내 동일한 임치계약의 신규·갱신 실적은 **1건**으로 인정
 - 예시 ① 신규 계약 1회, 갱신계약 1회 → 실적 1건으로 산정
 - ② 갱신계약 2회 이상 → 실적 1건으로 산정
- 양자간 계약에 기관이 편입한 경우 삼자간 계약으로 인정
- 임치 수수료만 지원되고 계약체결이 미완료 된 건은 불인정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R&D/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이 사업 결과물을 임치한 경우 양자간 계약 수수료 지원 실적으로 인정

임치제도 규정반영 및 활용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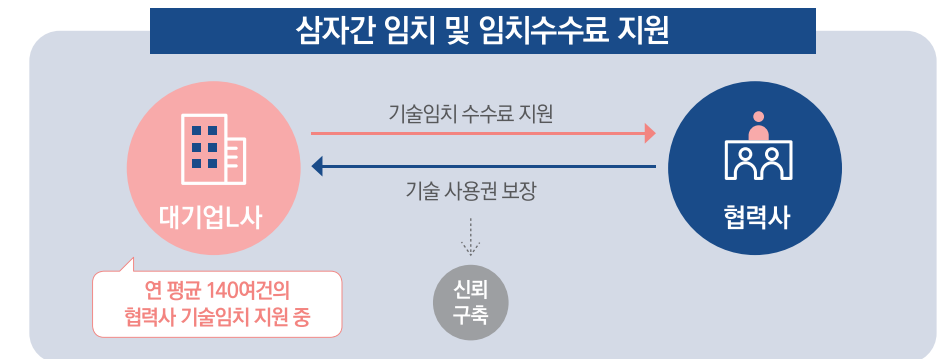
- 해당 공공기관 기관장 승인 및 관리 규정(지침) 내 임치제도 반영 여부 등 실적서류, 규정 반영을 활용한 임치계약 실적 확인
(예시) 규정집,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 내부 규정(지침 등)을 활용한 계약실적이 평가기간 내 1건 미만인 경우 불인정
- 내부 규정(지침 등)을 활용한 계약실적은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는 건만 인정(갱신계약의 경우, 평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인정)
- 기술임치 의무화 또는 권고/우대사항 등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인정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사례 [공공기관]



- 2019년 공공기관 K사는 G사로부터 첨단 보안기술 탑재 제품 개발을 의뢰받아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후 납품
- 개발의뢰 고객 G사의 안정적인 사용권 보장과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삼자간 임치** 계약 체결
- 장기간 (10년이상) 활용이 필요한 개발 제품 특성에 따라 매년 갱신을 통하여 임치 계약 유지 및 기술보호 중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사례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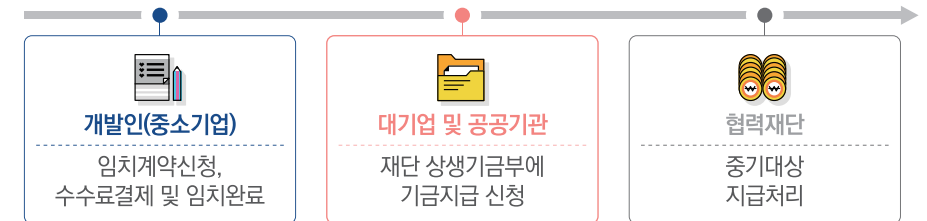


삼자간 계약을 통한 핵심기술 임치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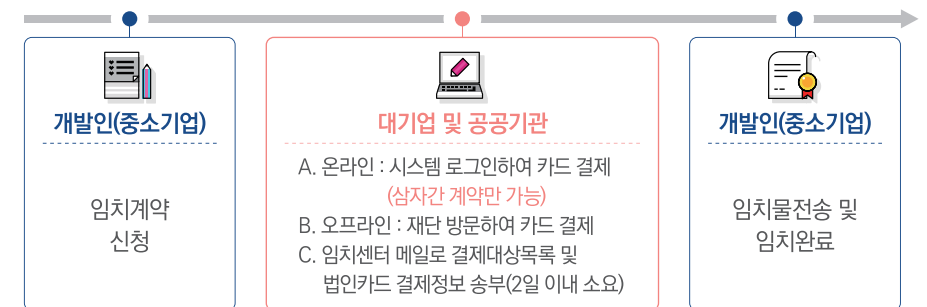
- 협력사 : **장기적 납품처를 확보**하는 한편 **기술탈취를 예방**하며 R&D와 생산에 집중
- 대기업 : 협력사의 파산이나 폐업 등 **만일의 사태에도 핵심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대비책**을 마련

협력중소기업 임치수수료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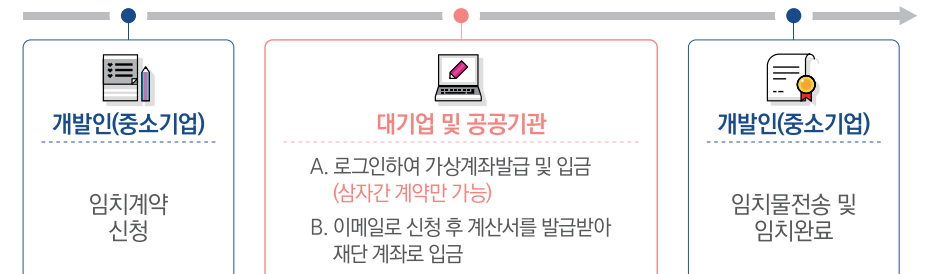
1 기금활용 (개발인 직접 결제 후 사후지원)



2 카드결제



3 계좌이체



임치제도 반영현황



기획재정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무화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소프트웨어 사업 참여하는 경우 기술임치 이용 사업자에게 기술성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가능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임치수수료 계상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에 임치제도 반영
SW부문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가 임치업무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임치의무화 반영



조달청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시 최대 3점 가점부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관리규정반영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55개 업종내 임치 활용규정 반영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사업명	지원내용	기업 부담비용	사전/사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행정조사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무료	사후구제
	기술자료 유용행위 행정조사	실태조사 후 기술유용행위 발견 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조사 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시 조사	무료	사후구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① 신규 : 30만원 / 1년 ② 갱신 : 15만원 / 1년 *창업, 벤처 등 1/3 감면 *장기계약(5년 이상) 1/2 감면	사전예방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지원	기업별 연계되는 지원사업에 따라 상이	사전예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	보험료의 30%	사전예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전기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수요에 맞춰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기업별 연계되는 지원사업에 따라 상이	사전예방
	상생형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대기업의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사업비 최대 2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사전예방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유출 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무료	사후구제
	법무지원단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6개월)	사후구제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① 조정 : 5만원 이내(부가세별도) ②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사후구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기술유출 의심 피해기업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무료(최대 5백만원)	사후구제
KIBO 기술보증기금 (1544-1120)	기술지킴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 기술개발 보유사실 입증	① 신규 : 30만원 / 1년 ② 갱신 : 15만원 / 1년 *창업, 벤처 등 1/3 감면 *부가세 별도	사전예방
	증거지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기술거래 과정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	① 신규 : 5만원 / 6개월 ② 연장 : 3만원 / 6개월	사전예방

기술자료 임치제도 Q&A

Q 임치 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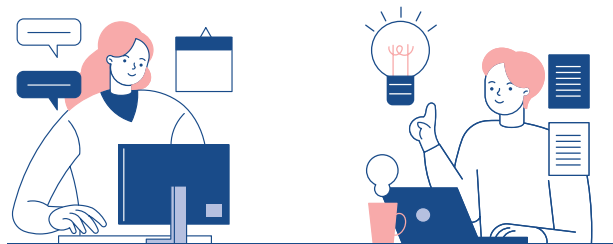
A 기업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술(정보)라면 임치가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사업화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있다면 모두 기술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기술임치 시 임치할 기술이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기술임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유용한 가치가 있는 기술정보라면 임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경우 각 권리로서 보호가 되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보호가 됩니다. 특허권의 경우 대상이 되는 발명의 요건이 있고, 저작권의 경우에도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널리 일반에 공개되어 알려진 공개된 정보를 기술임치할 수 있나요?

A 통상적으로 기술임치를 할 기술정보는 적어도 널리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정보로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술정보여야 합니다.



Q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를 전제로 하여 권리범위를 등록하여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허와 달리 임치제도는 비공개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특정기술을 개발한 이후 선제적으로 기술을 임치하여 비공개정보로 기술을 보호하고, 임치된 기술 중 향후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과정에서 공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특허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를 상호보완하여 활용하는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서는 ①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제공받은 기술에 대한 제3자 제공 및 자기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관계에 따라 기술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우선 해당기술을 임치하여 영업비밀로 보호하면서, 보완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권 등 권리취득을 통한 중복적인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기술자료 임치를 할 수 있는 곳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센터'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술보증기금 기술지킴이'가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 임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기술자료 임치제도 관련조항 안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시행령 제1조의3(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 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종류·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화로 배우는 기술자료임치

소중한 회사의 기술 보호는, 기술임치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술보호와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www.kescrow.or.kr

☎ 02-368-8484

✉ escrow@win-win.or.kr



기술자료
임치센터 안내

TALK

기술자료임치센터